

강화군 복지재단 규정(공포)

공포번호 제7호

1. 제 명 : 강화군 복지재단 인사 규정

2. 개정이유

- 수탁시설인 강화군 행복센터장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대리 조항 신설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제17조 제3항 신설

- ③ 수탁시설의 장이 궐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시설의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회 강화군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강화군 복지재단 인사 규정」을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10월 02일

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 윤



강화군 복지재단 규정(공포)

공포번호 제8호

1. 제 명 : 강화군 복지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

2. 개정이유

-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재단 규정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내용을 개정을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제16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별표1(비고) 개정

- 음식물 가액 범위 조정(3만원 → 5만원)
- 선물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가액범위 조정(10만원 → 15만원)
청탁금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(20만원 → 30만원)
- 5만원까지 허용되는 선물의 상품권은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되며
백화점상품권·온누리상품권·지역사랑상품권·문화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제외

제12회 강화군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강화군 복지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」을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10월 02일

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 윤



강화군 복지재단 규정(공포)

공포번호 제9호

1. 제 명 : 강화군 복지재단 기부금품 운영에 관한 규정

2. 개정이유

- 기부금품 사용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일부 오류 조문을 정정하고자 내용을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- 제4조(기부금품의 사용 등) 제2항중 “제8조제1항”을 “제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2회 강화군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강화군 복지재단 기부금품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10월 02일

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 윤

